

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 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58 |
|----------|----|

발의연월일 : 2006년 12월 5일
발 의 자 : 한창동 · 최재옥 · 오용식
김화수 · 김인수 · 김범기
이연구 · 송은섭(8인)

제안이유

- 자동차관리사업중 자동차매매사업자 등록기준에 1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것을
- 자동차 성능점검제도의 개선 등으로 자동차매매에 있어 자동차 품질의 보증과 신용질서의 정착으로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

주요내용

- 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(이하 “하자보증금”이라 한다)을 확보할 것 (제4조제1항제2호)을 삭제
- 제5조 (하자보증금의 예치 등) 삭제

참고자료

- 관계법령 발취

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 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제4조(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)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(이하 “매매업”이라 한다)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제1항제1호”를 “제1항”으로 한다

제5조를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| 개 |
|---|--|
| 행 | 정 |
| 안 | |
| <p>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</p> <p>제4조(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) ① 법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(이하 “매매업”이라 한다)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는 것</p> <p>2. 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이상의 보증금(이하 “하자보증금”이라 한다)을 확보할 것</p> <p>②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는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는 각 1인에게 적용되는 면적기준</p> | <p>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</p> <p>제4조(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) ① 법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(이하 “매매업”이라 한다)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 삭 제</p> <p>2. 삭 제</p> <p>②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p> | <p>을 제1항의 규정에</p> |
| <p>제5조(하자보증금의 예치등)①제4호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,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월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5조 (삭제)</p> |

관계 법령 발췌

□ 자동차관리법

- 제53조 (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)**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④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·환경오염·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